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의 종사자 등은 성범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유치원, 학교, 병원, 학원, 체육시설 등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으로,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사기관: 경찰(☎ 112,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기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 *근거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신고의무제도 Q&A

Q 신고를 하고 싶으나 피해자가 거부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 책임자(시설장)나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신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Q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은 어디인가요?

구분	기관유형	구분	기관유형
1호	유치원	9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호	학교, 위탁교육기관 등	10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02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11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소시설
203	제주국제학교	12호	청소년활동시설(체육시설 포함)
3호	의료기관	13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4호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13호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호	장애인복지시설	14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6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기관	15호	체육단체
7호	학원, 교습소	16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8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근거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신청 안내

☑ 교육 안내

- 교육신청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
- 교육일정: 2026년 1월(예정) ~
- 교육비: 성평등가족부 전액지원(수료증 발급)
- 교육문의: 02-2100-6409(평일)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 근거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구분	기관유형	적용 기관
1호	유치원	유치원
2호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위탁교육기관(학습부진관련)
202호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안센터, 위스쿨 등)
203호	제주국제학교	제주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204호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 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호	학원, 교습소, 개인교과외교습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 교습소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 교습소,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개인교과외교습자
4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5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과학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립복지관, <문화시설> 공연·전시·도서관, 도서관, 문학관, 지역문화 활동시설, 문화보급 전시시설,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기타> 시민화관, 어린이화관, 공원, 광장, 동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6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60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기관
8호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자리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원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친화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지원지원전문기관,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다함께돌봄센터
9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902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0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11호	체육시설(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포함)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 시설 등 「체육시설법」 제3조의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2호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기사법」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
13호	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14호	경비업법인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15호	청소년단체로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사체의 장의 허가·등록한 비영리 법인·비영리민간단체
16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호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18호	가정 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사업장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19호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시설
20호	2025.10.23 부로 삭제	2025.10.23 부로 삭제
21호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화관, 과학교육원 등 교육감이 조례 등에 따라 설치
22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23호	아이돌물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물 서비스제공기관
24호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25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호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안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
- 내용: 취업제한기간 중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금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06. 6. 30.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10. 4. 15. 이후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아동·청소년 및 성인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 '18. 7. 17. 이후에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최대 10년)
- '18. 7. 16.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

형의 종류	형 확정일		
	'06. 6. 30. ~ '09. 12. 31.	'10. 1. 1. ~ '18. 7. 16.	'18. 7. 17. 이후
3년 초과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5년 제한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 제한	법원이 형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 선고 (최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3년 제한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 제한	
벌금형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제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채용 예정자 및 운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취업·운영 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신청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
- 행정기관의 장: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
- **구비서류**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인·허가증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지 제9, 10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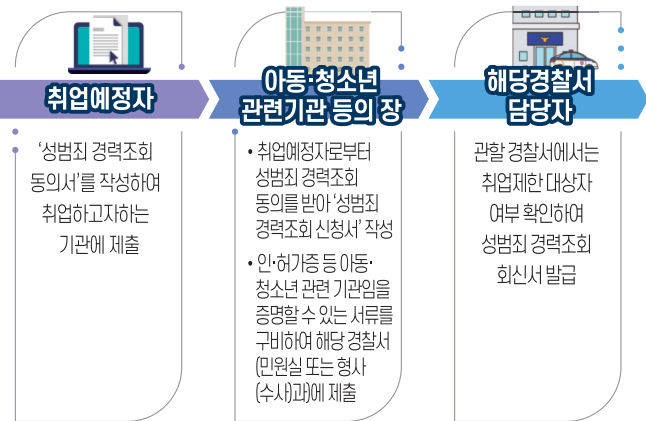
✔ 성범죄 경력 확인시기

- (운영예정자) 기관운영 신청(인가·신고)시 관할행정기관 담당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 (채용예정자) 채용 및 노무제공 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후 근무시작)
※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의 조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방법: 경찰서에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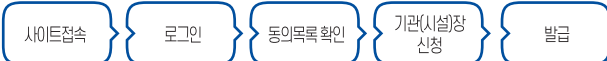
▶ 기관(시설)장의 시설정보 사전등록



▶ 취업예정자 동의



▶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 성범죄경력 신청·회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안을 위해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실시 (24시간 신청 가능)

② 행정기관의 조회 신청 방법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 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③ 취업자 본인의 조회 신청 방법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증 등 기관 증명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취업·운영 예정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하여 성범죄 경력 회신서를 제출한 경우 경력조회 한 것으로 같음

✔ 취업제한제도 Q&A

Q 채용예정자에 대해 채용 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도 되나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채용예정자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지 확인한 후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 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이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일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발견 즉시 해임조치를 해야 합니다. 점검 행정기관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해임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드립니다!

Q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인·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Q 성범죄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범죄 신고전화(☎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사기관에 성범죄 신고 후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고사건에 대한 사건 수사기관(해당 경찰서)과 사건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신청서 작성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 정책정보 → 인권보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도(작성양식 다운로드)

※ 지급신청서 제출: 메일 또는 우편제출

• 메일 제출처: cyprotection@korea.kr
(매일 송부 후 수신 여부 확인 요망, ☎02-2100-6409, 6416)

• 우편 제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우)03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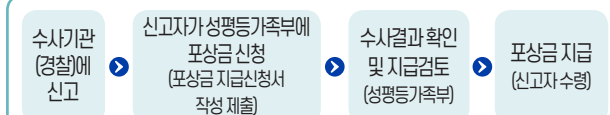
※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①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② 범죄 신고자와 포상금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③ 기망으로 성범죄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불가

Q 포상금은 성범죄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포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신고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은?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100만 원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범죄 제8조)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인·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인·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범죄 제8조의2)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범죄 제11조1항, 4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범죄 제14조) -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또는 채무관계, 위계·위력,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 영접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범죄 - 강요행위를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가 그 대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범죄 ■ 알선영업행위 등범죄 제15조) -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장소 제공을 업(業)으로 하거나,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범죄 - 성매수 장소 제공이나 알선 또는 알선정보제공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범죄 - 영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는 범죄
70만 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범죄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범죄
30만 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범죄 제11조2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자·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

* 근거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